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329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6.

발 의 자:이철규·서일준·이양수

유상범 • 권명호 • 김정재

장제원 • 구자근 • 유영석

서정숙 • 한무경 • 김도읍

권성동 · 정운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는 석 탄의 경우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석탄광업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 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.

이에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,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게 장부·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.

제36조제1항 중 "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"을 "다음 각 호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2. 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품질유지 및 검사) ① 석	제25조(품질유지 및 검사) ①
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	
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	
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	
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	
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	
다. <u><후단 신설></u>	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
	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
	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
	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
	<u>또한 같다.</u>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6조(보고 및 조사 등) ① 산업	제36조(보고 및 조사 등) ①
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	
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<u>석탄</u>	<u>다음</u>
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	<u>각 호의</u>
<u>위하여 필요한</u> 경우에는 석탄광	
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	
여 그 사업의 장부·서류와 그	
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	
게 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1.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
	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<u><신 설></u>	2. 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

	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
	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